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28.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11. 17.
- 회부일 : 2023. 11. 20. (의안번호 : 23-162)

2. 제안이유

납세자보호의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
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안전 심의 범위 변경(안 제8조)
-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기준 변경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시·군·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」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

○ 입법예고 : 2023. 10. 5 .~ 10. 25.(제출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납세자보호의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조례안 개정내용

- 안 제8조에는 안건 심의 범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100만원 초과인 안건을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변경되는 내용임.
- 안 제16조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기준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 신청하는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신청으로 변경되는 내용임.

6. 종합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중 납세자에게 혼란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치구별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문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자 혼란방지 및 형평성 제고에 따른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충민원 안건심의 기준 금액을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통일성 있게 맞추므로 행정 처리에 따른 혼란과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